

의안번호	제 503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월 일 (제 회)

**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
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10년 5월 27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503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10년 5월 27일

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 설치근거인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(법률 제10143호, '10. 3. 22.)되어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- 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 대비표 : 해당없음

5. 관계법령 발취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**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
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**

충청북도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

[시행 2008. 1. 1] [법률 제8435호, 2007. 5.17, 타법개정]

제11조(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) ①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고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해 특별시장·광역시장 또는 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소속하에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(이하 "실무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. <개정 2007.3.23>

- 1.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에 관한 사항
- 2. 피해자와 친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
- 3.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

③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당해 시·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피해자 및 친족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
<개정 2007.3.23>

④ 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

지원에 관한 특별법 [법률 제10143호, 2010. 3.22, 제정]

부칙 <제10143호, 2010.3.22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)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,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 등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본다.

제3조(사무이관 등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일제 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와 태평양전쟁전후국의 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(이하 “종전의 두 위원회”라 한다)의 소관 사무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이를 승계한다.

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행위와 종전의 두 위원회에 행한 행위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가 행하거나 위원회에 행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제출된 신고와 신청 등으로 본다.

제4조(위원 및 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의 위원(위원장을 제외한다)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, 소속 공무원 및 직원으로 본다.

제5조(파견공무원 등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두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과 직원으로 본다.

제6조(다른 법률의 폐지) 다음 각 호의 법률은 각각 폐지한다.

1.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
2.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